전북특별자치도 공고(제2026-1163호)

- 2026년 제2차「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

2026년 제2차「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출자사업 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5.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출자사업 개요

가. 출자 규모 및 결성목표

(단위: 억원)

연번	출자 분야	세부 분야	출자예산		결성 목표액	최대 출자비율	비고 (선정)
			출자약정	'26년 출자			
합계			45	8	450		
1	창업·벤처	문화 콘텐츠	20	4	200	10%	1개사
2	스케일업	바이오	25	4	250	10%	1개사

※ '26년 출자액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의 확정된 예산으로 조합 설립 시 반드시 반영하고, 출자금 납입방식은 분할납 원칙으로 향후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운용사와 별도 협의 예정

※ 분야별 1개 분야만 제안 가능(복수 신청 불가)

※ 2026년 1차 미선정 운용사도 제안 가능

나. 출자 계획

구분	세부내용
출자규모	◉ **45억원('26년 출자액 8억원)**
출자대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금 납입방식	◉ **분할납(원칙)** * 정책펀드의 납입방식 등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펀드 존속기간	◉ **10년 내외**
투자방법	◉ 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분야별 전북도(전북도 지역 출자파트너 포함) 출자액의 20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가. 신주 인수 나. 신규 주식연계채권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정책펀드의 투자방법 고려 등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운용사 선정	◉ **총 2개사**(세부 분야별 1개사) *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펀드에 선정된 운용사만 신청 가능 * 적합한 운용사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재공고를 통해 선정 예정
운용사 선정방법	◉ **1차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실사) + 2차 발표평가** * 8p「운용사 선정 절차 및 일정」참조
접수 마감 시한	◉ **2026년 6월 26일(금), 18:00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별첨[1~7] 2026년「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출자 신청서 등 작성 서식 반드시 준수
조합 결성 기한	◉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으나 출자 심의 등으로 결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연장 허용

다. 출자 조건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운용사
의무출자비율</td><td>◉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단,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약정총액의 3% 이상
*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td></tr>
<tr><td>핵심운용인력
요건</td><td>◉ 인원 : 총 2인 이상 참여(대표펀드매니저 포함)
◉ 단 펀드 규모가 300억원 초과할 경우 3명 이상 참여
◉ 경력 : 투자경력 평균은 4년 이상*일 것
<table>
<tr><td>대표펀드
매니저</td><td>○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참여 불가</td></tr>
<tr><td>핵신운용
인력</td><td>○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참여
※ 신청 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td></tr>
</table></td></tr>
<tr><td>투자금
용도제한</td><td>◉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채무 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사용 금지</td></tr>
<tr><td>자료 제출</td><td>◉ 제출 시기 : 분기별
◉ 제출 자료
① 피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② 증빙자료(투자계약서 상 전북도 본사·공장 이전 등)
③ 전북도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전체 피투자기업의 투자 실적 포함)</td></tr>
<tr><td>조합운용
현황 보고</td><td>◉ 보고시기 : 매월
◉ 보고시스템 : 전자보고시스템(벤처투자펀드운용정보시스템)</td></tr>
<tr><td>규약 반영</td><td>◉ 운용사가 전북도에 제안서 제출 시 출자조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은 조합 규약에 반영하여야 함(타 유한책임조합원들과의 사전협의 必)</td></tr>
<tr><td>기타</td><td>◉ 상기조건 이외 관리보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등은 최종 협의된 정책펀드의 규약 기준에 따름 단, 성과보수는 규약에 의거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전북도가 수령할 분배금의 일정부분은 자체 성과평가 결과(별도 공지)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전북도의 출자조건을 정책펀드에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Co-GP의 경우 신청 운용사 모두 출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td></tr>
</table>

라. 세부 분야별 투자 대상

<table>
<tr><th>출자 분야</th><th>세부 분야</th><th>주목적 투자 대상</th></tr>
<tr><td colspan="2">공통사항</td><td>◉ 전북도 출자액의 200% 이상을 전북도 소재 세부 분야별 주목적 투자 대상 창업·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세부 주목적(의무)투자대상은 향후 선정된 운용사와 별도 협의 가능

< 전북도 소재 기업 >
○ 전북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등기 및 4대보험 등 증빙 서류 必)
○ 투자금 납입일부터 1년 내 전북도로 이전하는 기업도 의무투자 대상기업으로 인정하되, 전북도의 분야별 주목적 투자금액 총액의 40%를 넘을 수 없음(사전에 본사 이전 및 공장 설립 목적, 상주인력 근무계획 등을 포함하는 이전 계획서 제출 必)
○ 원칙적으로 지점, 연구소는 인정하지 않으나, 상주인력이 3명 이상 있으며 실제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협의가 필요하며, 이전 투자는 제외)
○ 의무투자 인정 후 투자기간 내 도외 지역 이전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의무투자 실적 제외
* 실제 영업활동 판단 : 전북도에서 수시 현장 실사할 계획으로 상주 인력이 없거나 활동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경고 조치(2회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영업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함)</td></tr>
<tr><td>창업·벤처</td><td>문화 콘텐츠</td><td>◉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①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중소·벤처기업 및 ②프로젝트에 40억원 이상 투자
◉ 단, 업력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에 2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에 1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 프로젝트 투자 >
○ 전북도 소재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한함
○ 정책펀드(모태펀드) 주목적 분야가 문화(콘텐츠) 계정에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정책펀드 문화 계정의 적용 의무(준수 의무 등)를 따름</td></tr>
<tr><td>스케일업</td><td>바이오</td><td>◉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후보기업 중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바이오 산업* 분야 창업·중소·벤처기업에 50억원 이상 투자

< 바이오 분야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바이오산업 분류체계(KSJ 1009)」에 따른 아래의 8대 바이오 산업 영위 기업
① 바이오의약 ② 바이오확학·에너지
③ 바이오식품 ④ 바이오환경
⑤ 바이오의료기기 ⑥ 바이오장비 및 기기
⑦ 바이오자원 ⑧ 바이오서비스</td></tr>
</table>

2. 선정 우대 및 기타 조건

○ 가감점 부여

평가 시 가감점 부여	배점 기준
계	-1점 ~ 5점
◉ 전북도 최소결성목표액의 20% 이상 상향 결성 제안	0.2점 ~ 0.5점
◉ 전북도 출자액의 250% 이상 투자 제안	0.5점 ~ 1점
◉ 분할납 납입 방식 및 2026년 전북도 출자액과 동일한 출자금 납입 제안	-1점 ~ 0.5점
◉ 공공 정책펀드의 출자사업과 전북도 출자사업의 해당 분야와 주목적 투자가 동시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2점 ~ 0.5점
◉ 결성목표액의 80%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전북도 출자약정액 포함)된 제안	0.2점 ~ 0.5점
◉ 중기부 TIPS운영사 또는 스케일업TIPS운영사	0.2점 ~ 1점
◉ 전북도 소재 벤처캐피탈 및 창업기획자	0.2점 ~ 0.5점

※ [별첨8] 파일 참고 : 평가(가감점 지표) 배점표

나. 기타 조건

분야	주요 조건
심의 제외	◉ 소관 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사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을 기준으로 펀드 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운용사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 관련 법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선정 보류	◉ 조합 운용과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분야		주요 조건
선정 취소		◉ 전북도에서 제시한 조합결성 기한 내 결성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제안 내용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북도에서 결정한 출자조건을 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서 또는 발표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있는 경우 ◉ 조합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운용인력의 겸직상태*를 결성일 이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겸직상태 : 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등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1. 최대 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너저의 변동 2. 투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3. 기타 투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서면심의 이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제재사항	해당연도 및 차년도 출자사업 참여제한	① 투자조합 선정 후 결성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자진 철회 등으로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 ② 결성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취소로 인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 ※ 해당 투자조합의 운용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③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기관이 달라진 경우 ※ 단,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 가능
	3년간 출자사업 참여제한	◉ 전북도가 출자한 투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하여 당해 투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3년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5년간 출자사업 참여제한	◉ 전북도 소재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 인정을 받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거나 허위 사실(상주 인력, 주소 등)이 인정되는 경우* * 전북도에서 수시로 현장 실사할 계획으로 2회 경고 조치를 받은 운용사
기타		◉ 상기조건 이외 출자 조건에 관련한 사항은 기 선정된 정책펀드의 공고조건을 따름

3. 운용사 선정 절차 및 일정

가. 선정 절차

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출자제안서 접수	→	1차 서면평가·현장실사
www.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26. 6. 15.		'26. 6. 26. 18:00 까지		'26. 6. 29. 주간

↓

일반출자자모집 및 협상, 조합결성	←	운용사 선정	←	2차 발표평가
운용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벤처투자위원회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발표평가 당일		'26. 7. 6.주간

※ 선정절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선정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통지 예정

나. 선정 방법

○ 접수된 제안서의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세부 출자 분야별 3개사 선정(개별 통지)**

*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면평가 점수표에 따라 세부 출자 분야별 선순위 3개사를 선정하되, **3개사 미만**이 신청한 경우에도 평가 진행

*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선정

○ **발표평가 평균점수가 동점**인 경우,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운용사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또는 **조합 결성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차순위자와** 협상 가능(조합결성 기한 내)

*** 차순위자 협상은 출자 주관기관의 판단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차순위 협상 없이 재공고 시행**

다.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내역
1차 서면 평가	기초 적격여부 판단	적부 판단	◉ 신청자격·선정배제 등 조건 해당 여부
	운용 전략	40점	◉ 투자전략(출자비중) 및 계획(출자방식) ◉ 전북도 정책 및 산업 연계* 전략 * TIPS · 및 스케일업TIPS 연계, AI · 바이오, 기업유치 등
	운용팀 구성	40점	◉ 운용인력 구성 및 책임운용 여부, 비수도권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성과 등(전북도 투자 포트폴리오 포함) ◉ 전북도 투자 최적화 전략* 유무 * 전북도 전담인력 배치 의지, TIPS프로그램 활용 등 전북도 투자기업 발굴(계획), 투자분야 산업 내 경력, 성공사례 도출(IPO·M&A)
	운용사 역량	20점	◉ 운용규모(AUM) 적정성 ◉ 운용사 운용 집중도, 사내 복지 및 인센티브, 밸류체인을 활용한 투자전략 및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등
	가점		◉ 공고문 상 우대기준 참조(최대 10점)
2차 발표 평가	운용 전략	45점	◉ 투자조합 운용 전략의 적합성 ◉ 펀드 조성 정책 목적 부합 여부, 주목적 투자분야 이행을 위한 구체성/적정성/실효성(전북도 연계) ◉ 운용프로세스(투자/회수, 리스크 관리 등) ◉ 조합결성 가능성 및 출자자 모집계획의 타당성
	운용팀 구성	35점	◉ 금융투자 및 산업 분야 전문성 ◉ 경력 및 투자/회수 실적 ◉ 운용팀의 안정성(근속기간 등) ◉ 운용 규모의 적정성
	운용사 역량	20점	◉ 운용사 강점, 차별적 요소, 인센티브제도, 고용유지 관련 시스템 보유, 이탈방지 방안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등

※ 평가항목 배점은 붙임(별첨 8) 참고

4. 신청방법

○ 접수 마감시한 : 2026. 6. 26.(금) 18:00

○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 : 2026. 7월중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또는 현장 접수(소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착 기준)

○ **제출서류** : [별첨 1~7] 작성 서류, 기타 제출서류

1) **[별첨 1~7]** 출자신청서, **PT 제안서 등 13부**를 제본하여 제출

※ PT 제안서 :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개별 통보)는 발표평가 2일 전까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제본하여 추가 제출

2) **기타 제출서류 : 원본 각 1부**와 **사본**(원본대조필) **2부**를 제본하여 제출

※ 감사보고서의 경우 별도 제본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회사등록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최근 3년간('22~'24) 감사보고서
◉ 출자자가 있을 경우 출자확약서 포함
◉ 기타 증빙자료

3) **전자파일(이메일) 및 USB : 1식 제출** (kaleeka@korea.kr / kyuwan97@korea.kr)

- 제출서류 모두 포함('[별첨1~7]' 및 기타 제출서류 스캔본 포함)

※ 파일명 : 2026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① 00/000분야)_운용사명
예 시 : 2026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① 창업벤처/ 문화컨텐츠 분야)_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기타 : 심사 당일 수정자료 제출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문의

○ **접수처** :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과 펀드투자팀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창업지원과

이종원 주무관(063-280-3227, kaleeka@korea.kr)

박재용 주무관(063-280-3273, wjsfkrh1@korea.kr)

최규완 주무관(063-280-3277, kyuwan97@korea.kr)

* 모든 문의사항은 본 공고문을 우선 시 함

* 전화 또는 구두 질의에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1. [별첨1~7] 출자신청서 등 작성 서식

2. [별첨8] 가점 부여 배점표

2026. 6. 15.

전북특별자치도지사